

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

제1조(목적)

이 내규는 본 대학원과 학점교환 협정이 이루어진 본교 전문대학원(이하 “전문대학원”이라 한다)간의 학점 교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규정) 전문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본 대학원 학생은 전문대학원과 합의된 교과목을 희망하는 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- ② 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과정은 12학점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전문대학원의 수강과목은 수강을 희망하는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전문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그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 수강과목의 이수구분은 타전공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.

제3조(수강신청절차) 전문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- ① 전문대학원에서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대학원의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수강과목을 결정하고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 2통을 대학원에 제출하고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한다.
- ③ <삭제>
- ④ 학기당 전문대학원 개설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은 석사과정은 3학점, 박사과정은 6학점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4조(시행)

본 내규는 2000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내규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2. 이 변경내규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3. 이 변경내규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 (변경조항: 2조 ②항, 3조 ④항)